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의안 번호	2586
----------	------

김 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서구1)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경 위원장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제한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용도지역에서 실시되는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9개 분야 21개 지역, 5천 m^2 ~ 평가대상 규모 미만)으로 환경청에서 실시하며, 동법 제4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조례 환경영향평가”)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각종 개발사업(지자체별 상이)으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정비사업 부지면적 6만 m^2 이상)와 조례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30만 m^2 , 건축물 연면적 10 m^2 이상) 대상 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즉, 중대형 사업장이 오히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소형 사업장이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위법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민간사업이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일관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 제4조제2항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민간사업 대상 사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